

의안번호	제 48 호
의결연월일	2004. 10.

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2004. 10. 15

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

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48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04. 10. 15
제출자 : 사천시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법령개정으로 현실과 괴리된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인용 관련 법령명 및 용어 정비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⇒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-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⇒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
나. 관련 법령의 인용 조항을 정비

- 지방세법 : 제23조의16제1항 ⇒ 제234조의16제1항
- 전쟁기념사업회법 :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
⇒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발췌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- 2) 입법예고(2004. 9. 1 ~ 9. 23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사천시 조례 제2004- 호

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사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 을 “5.18민주유공자예우에
관한법률”로 하고, “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” 을 “고엽제후유
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”로 하며, 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” 를 각각
“5.18민주화운동 부상자”로 한다.

제11조제3호중 “제23조의16제1항“ 을 ”제234조의16제1항“ 으로 한다.

제21조전단중 “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” 를 “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내
지 제5호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관계법령발취
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
第1條 (目的) 이 법은 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 관한 法律에 의한 報償과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枯葉劑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4.1.20>

전쟁기념사업회법

第5條 (事業) ①紀念事業會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수행한다.

1. 戰爭紀念館(이하 "紀念館"이라 한다) 및 紀念塔의 建立·운영
2. 紀念館 資料의 蒐集·보존·管理·展示 및 調査·研究
3. 紀念館 資料 및 紀念事業에 관한 弘報·教育 및 이에 관한 각종 刊行物의 製作 및 配布
4. 戰爭에 관한 學藝活動
5. 戰爭史 研究

지방세법

第234條의16 (稅率) ①第234條의15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土地의 綜合土地稅는 다음의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을 그 稅額(이하 "綜合合算稅額"이라 한다)으로 한다.<개정 1990.4.7>